

■ 政府 施策 ■

中企 고유업종 단계적 解除

- 大企業 참여가능성 큰 88개 業種은 유보 -

중소기업고유업종이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사료절단기·동복강선·실험대제조업등 45개업종은 내년에, 울타리철선·소형조타기제조업등 47개업종은 오는 97년부터 각각 해제된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현행 496개 단체 수의계약 대상품목이 연차적으로 축소되고, 輸出實績이 높은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시 우대받게 된다. 이와함께 WTO출범에 따라 컴퓨터프로그램법의 보호기간을 연장하는등 상표법·저작권법등 지적재산권제도를 내년중에 정비, 9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유업종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이미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사양화된 업종은 내년에 조기해제하고, 일정기간만 더 보호하면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는 업종은 예시기간을 거쳐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 동력탈곡기제조업·사료절단기제조업·동복강선제조업·실험대제조업·맨홀제조업등은 내년 1월1일부터 △ 울타리철선제조업·정미기제조업·소형조타기제조업·연하장제조업은 오는 97년부터 해제된다.

그러나 해제시 대기업의 참여가능성이 큰 스테인리스용접강관제조업·생석회제조업·칠심토야제조업·타올제조업등 88개 업종은 해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개선, 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수출실적 중대업체에 대해서는 배정비율을 우대하는 한편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참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부적합한 단체수의 계약품목은 지정제외하되 수혜업체 및 조합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도입,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또는 指名競争을 할 수 있는 對象品 목을 별도로 선정, 공고할 계획이다.

電氣用品 형식 承認대상 대폭 縮小 — 商工部, 統合公告개정고시 10월 15일부터 시행 —

가종용 온열치료기 등 9개 품목이 수입시 형식승인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기시트·전기조끼등 41개 품목은 1종인 형식승인대상에서 2종인 신고대상품목으로 전환된다. 또 공업용 요소비료에 대한 수입추천제가 폐지돼 공업용비료의 수입이 완전자유화되고 귀금속·주화·금·우표·수입인지 등을 자가화폐수집용이나 외국전시용 및 화폐수집가에 대한 판매용으로 수출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의 인증허용금액이 종전의 미화 1천달러 상당액(판매업자 3천달러상당액)이하에서 미화 10만달러 이하로 완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11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통합공고를 개정했다.

이번 통합공고 개정으로 1종 전기용품인 가정용온열치료기·기타가정용전열치료기·가정용전동력응용치료기, 가정용광선치료기·가정용전위치료기·가정용전격치료기·가정용저주파치료기·가정용초음파치료기·가정용초단파치료기 등 9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에 제외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 전기시트·전기조끼·금속제카풀링·금속제코넥타·금속제캡·금속제엘보·전기문걸이·물수건포장기·전기실수기·등사기·라미네이터·기타단상유도전동기·야채세정기·전기강통띠개·전기칫솔·전기구두닦기기·가정용전기채유기·전기칼날갈개·관상식물용히터·전기빗·파마넨트기·타울찜통·수도동결방지기·전기온수보온기·전기우유포트·전기수염깎기용탕비기·옥수수튀김기·전기보온그릇·전기보온접시·전기가는기·전기채난의자·전기인두가열기·자동온도조절기·전자개폐기조작용스위치·나사로우젯트·당김로우젯트·기타로우젯트·전자식살균등용안정기·전자식오존발생기용안정기·8mm영사기·반사투영기등 41개 품목은 형식승인대상(1종)에서 신고대상품목(2종)으로 전환됐다.

이로써 형식승인대상인 1종 전기용품은 종전 306개 품목에서 256개로 축소되고 신고대상인 2종 전기용품은 종전 45개품목에서 86개로 확대됐다.

이번 통합공고개정에서는 환경처 고시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 고시된 부틸렌에틸퀴나졸린 등 5개 품목을 수출시의 신고대상품목과 수입시의 품목등록대상품목으로 추가지정, 대상품목을 464개로 확대했다.

이와함께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및 기구나 설비 등의 수입요건을 추가 규정, 호이스트·천정크레인·타워크레인 등 8개 검사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설계검사 합격품목에 한해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外貨貸出용도규제 緩和 방침 – 大企業 편중안되게 中企 비율신설 –

정부는 중장기 외화제도개혁이 추진되는 내년부터 外貨貸出을 적극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화대출의 용도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응자비율 규제도 완화하는 동시 외국환은행의 외화대출 취급 규정도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외화대출에 중소기업 의무비율을 신설하고 응자재원 조달에 대한 현행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財務部 및 韓銀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외환제도개혁의 첫해인 내년부터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재무부는 “商業차관·해외증권발행 등의 자본거래자유화에 따른 수혜자가 주로 대기업에 국한되는 만큼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외화대출을 조기에 자유화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화대출은 응자대상이 ▲시설재 수입자금 ▲계획조선용 기자재 수입자금 ▲중소기업 첨단기술도입비/용역비 ▲해외직접투자자금 ▲輸銀협조용자 ▲외채원리금상환등으로 제한돼 있으며 응자비율도 70~100%로 규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응자비율 규제를 없애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응자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外貨貸出 활성화 조치와 함께 중장기 융자재원비율 규제를 폐지할 계획이다. 현행 국내 외국환은행에 대한 융자재원규제는 3년이상 중장기 외화대출의 50% 이상을 중장기로 차입(韓銀 외환보유고 지원은 중장기 차입으로 인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또 외화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외화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신설키로 했다. 최근 수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비율은 35%수준이나 의무대출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외환당국은 아울러 은행별 외화대출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국산 시설재구입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 현행 外貨貸出 용도및 융자비율

융 자 대 상	융 자 비 율
△ 시설재 수입대금	
◦ 제조업	大企90%, 中企100%
◦ 비제조업	
· 연구용	90%
· 항공기	80%
· 중고선박	大企 80%, 中企 90%
· 전원개발등 SOC시설재	大企 80%, 中企 90%
△ 계획조선용 기자재수입대금	80%
△ 중소기업 첨단기술도입비 / 용역비	100%
△ 해외직접투자자금	大企 70%, 中企 80%
△ 輸銀 협력융자자금	80%
△ 외채원리금상환	100%

시험·검사기관相互認定 적극 추진 – 工振廳, ILAC총회 韓·EU 각료회담에 대표단 –

공진청은 ILAC총회 및 한·EU 각료회담에 대표단을 잇달아 파견하는 등 외국과의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진청에 따르면 정부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험·검사기관의 상호인정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홍콩에서 개최된 ILAC '94(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총회에 국제 인증국장을 단장으로 관계 시험연구원 관계자등이 참가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 미국·영국·일본·호주등 40여개 국가와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등 10여개 관련 국제기구에서 참가, 국제무역에 있어서 시험결과 및 시험·검사기관 인정의 역할, 국가간 시험·검사기관·시험·검사기관 평가사 자격 및 훈련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공진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중 평가사의 자질향상과 시험소 인정제도 운영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주요교역 상대국과 시험·검사기관간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추진, 국내기업이 외국의 시험·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수출이 가능토록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이달말에는 韓·EU 각료회담에도 관계자를 파견, EU에서 환경·위생을 이유로 96년 시행예정인 EU 강제인정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타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각료회담시 EU측에 협상대상품목을 제시한 전기전자분야 331개품목, 원구류 30개품목, 계량계측기계 23개품목등 14개분야 460개 품목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토록 요구할 계획이다.

EU측은 92년 9월 상호인정 협정의 교섭지침을 채택하고 한국을 비롯, 미국·일본·호주등 교역량이 많은 10개 역외국가를 회담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개별 국가별로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한편 ILAC은 각국의 시험·검사기관간의 상호인정을 통한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된 국제 회의로서 77년 덴마크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이래 13회에 걸쳐 개최됐다.

新技術 인정대상 58개 선정

- 11월6일까지 異議신청, 11월말 認定書수여 -

정부는 국산신기술(KT)인정을 신청한 183개 기술에 대한 심사를 거쳐 58개 기술을 신기술 인정대상으로 선정, 공고(과학기술처 공고 제 1994-59호, '94. 10. 22)했다.

이 기술에 대해서는 11월 6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거쳐 올 11월말 국산신기술 인정서가 수여된다. 국산신기술로 공고된 58개 중 중소기업 기술이 18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 1994년 하반기 국산신기술 인정 대상기술

〈전기·전자〉

회사명	기술명	인정기간
(주) 금성사	분리형 룸 에어콘 실내기의 저소음 유로시스템	2년
(주) 금성사	Rear Projection TV 광학계기술	2년
(주) 금성사	BLDC모터의 인버터 제어기술	2년
대우전자(주)	VCR용 헤드드레프의 DLC 코팅기술	2년
대우중공업(주)	정현파 구동형 AC서보모터 및 드라이브 기술	2년
대홍전자	자성저장매체를 이용한 디지털 노래반주 시스템	2년
런나이코리아(주)	Gas Boiler의 Econo-Safeul Auto Control System	3년
삼성전자(주)	유선형 청소로봇의 주행 및 전원제어 기술	3년
삼성전자(주)	일체형 흘로그램 PICK-UP	2년
삼성전자(주)	초소형 MD PICK-UP	2년
삼성전자(주)	VMS용 신호처리 기술	2년
삼성전자(주)	In-Circuit Testing기술	2년
선명상사	BUS POS SYSTEM	2년
아신전자(주)	CCD CAMERA 전원변환 공급장치	2년
오리온전기(주)	HDTV 및 Wide Vision CRT용 MP-DQF 전자총 System	2년
효성중공업(주)	초고압차단기용 접점설계 및 제조기술	2년

〈금속·비금속〉

회사명	기술명	인정기간
금성전자(주)	원자력발전소용 Class 1E Cable 제조기술	2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상공자원부는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 유와 주요골자를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상공자원부 공고 제 1994-103호, '94. 10. 20)했다.

1.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시행령이 일부개정('94. 8. 19 대통령령 제14,362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전기공사업 신규면허발급 공고기간이 길어 신규면허신청업체에 불만이 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공고기간 70일을 40일로 조정함.
- 나. 전기공사업의 신규 면허공고기간 단축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다. 제2종 공사업자의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기간이 시·도에서 한국전기공사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기관을 한국전기공사협회로 조정함.
- 라. 공사실적 제출시 발주자의 도산 또는 폐업등으로 공사실적 증명발급이 불가능한 업체의 구제를 위하여 그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토록 함.
- 마. 수급한도액의 면허수첩 기재시기를 효력발생 시점 이후로 조정함.
- 바. 전기공사업의 영업정지처분 사유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조정함.
- 사. 공사실적 미달로 인한 면허 취소사유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
- 아. 전기공사업자의 면허기준 유지여부에 대한 실태파악을 시·도공무원이 업체방문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어 민폐해소 및 행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업계 스스로 제출토록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상공자원부장관(참조: 전력수급과장, 500-27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구성과 확산사업 시행계획 공고

- 과학기술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을 산업계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한 연구개발성과 및 경험을 산업계에 널리 확산, 기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확산사업」을 주요 국책사업의 하나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금번 추진할 「연구성과 확산사업」의 범주에는 「유형 I」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 「유형 II」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업계 기술혁신 지원사업, 「유형 III」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유형 IV」 기술개발 상담센터 설치·운영사업 등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 동 사업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연구소등)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성과 확산사업 시행계획

1.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무상양허사업 「유형 I」(제4차 사업 대상과제 신청)

〈사업목적〉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자원(기술, 인력, 연구개발경험등)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경쟁력 강화 및 기술개발 활성화를 도모

〈사업내용〉

-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업화 지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양허
 - 무상양허된 기술에 대한 기업화 기술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인력훈련, 기술향상, 기술지도 실시 등

〈신청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우수연구센터(ERC/SRC) 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정부투자기관연구소등 기술보유기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기술료 특전

– 연구기관, 대학 등이 보유한 기술의 무상양허 및 기술료 면제

○ 기술지원사업비 지원

– 기술지원사업 소유비용 중 50% 정부지원(1,000만원 내외)

○ 기업화에 따른 융자추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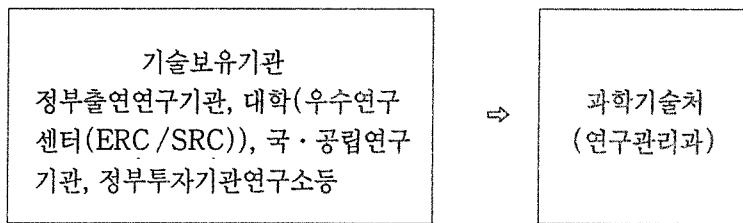
– 기술개발자금, 시설 · 운전자금융자 관계기관에 추천

– 융자지원결정은 융자기관의 별도심사에 따름

〈대상과제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994년 11월 1일 ~ 12월 20일 (7주일간)

○ 신청절차



○ 접수처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02 · 503-7627)

※ 금번 조사되는 대상과제는 1995년 2월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추진예정
임.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산업계 기술혁신 지원사업

[유형 II]

○ 산업계에 대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지원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산업계 기술개발제반에로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고 각종 기술정보 교류 등을 촉진시켜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

〈사업유형〉

○ 유형 II A : 연구원의 기업 기술지원사업

— 오랜 연구개발 경험을 보유한 연구원과 기업간에 수행되는 기술지원사업

○ 유형 II B : 연구조직 단위의 기업 기술지원사업

— 기업과 출연연구기관의 전문분야 단위연구조직간에 수행되는 기술지원사업

○ 유형 II C : 출연연구기관의 기업 기술지원사업

— 출연연구기관과 기업간에 기관차원에서 수행되는 책임기술 지원사업

〈신청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개발자원의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

○ 기술지원사업 소요비용 중 50% 정부지원

— 유형 II A : 500만원 내외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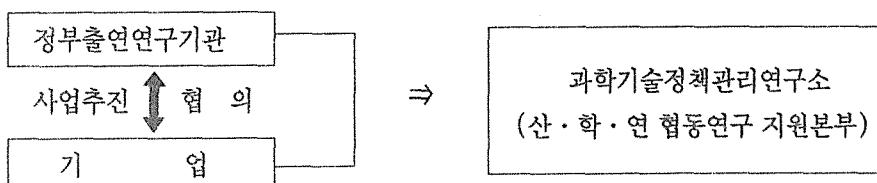
— 유형 II B, II C : 1,000만원 내외 정부지원

〈신청방법〉

○ 사업추진 협의기간 : 1994년 10월 19일 ~ 1994년 11월 12일

○ 신청기간 : 1994년 11월 1일 ~ 11월 12일 (12일간)

○ 신청절차



○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학·연 협동연구 지원본부

3.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 지원사업 [유형 III]

〈사업목적 및 내용〉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기술보유자가 출연연구기관의 전문인력, 연구시설,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체제를 구축

—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혁신센터(TIC), 기술창업보육센터(TBI) 등의 설치를 지원

〈신청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내용〉

- 창업지원 기반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별도 검토

〈신청기간〉

- 1994년 11월 1일 ~ 11월 12일 (12일간)

〈접수처〉

-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산·학·연 협동연구지원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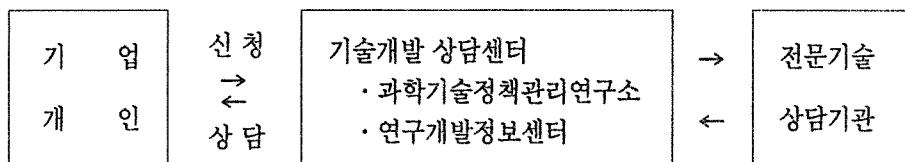
4. 기술개발 상담센터 설치·운용사업 [유형 IV]

〈사업목적 및 내용〉

- 기업 또는 신기술 창업자 등의 기술개발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기술정보 등의 알선체제를 마련함.

— 이를 위해 『기술개발 상담센터』를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및 연구개발 정보센터에 설치함.

〈사업체계〉



〈사업추진방법〉

- 기술개발 상담센터 안내서 참고

〈사업안내 및 문의〉

- 과학기술처 연구관리과(02-503-7627)